

의안번호	
의 퇴 인	장종태 의원
회 답 일	2024.10.16.
추 계 번호	24C43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의 지급액을 전년도 지급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8조원(연평균 5.6조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안 제4조)	5.5	5.6	5.7	5.7	5.7	28.0	5.6
－ 국비	4.1	4.2	4.2	4.3	4.3	21.0	4.2
－ 지방비	1.3	1.4	1.4	1.4	1.4	6.9	1.4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결과 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항) 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상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아동수당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의무규정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이상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에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된 아동수당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시나리오)(2023.12.) 사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사용함¹⁾
- 현행 사업의 평균 국고보조율²⁾과 아동수당 지급률은 2024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아동수당(안 제4조제1항)과 부모급여(안 제4조제5항)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지출증가분임
- (아동수당) “개정안에 따라 0~17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2024년 지급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인 수당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인 기존 0~7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24년 기준)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1)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025년 2.2%, 2026년 2.2%, 2027년 2.1%, 2028년 2.1%, 2029년 2.1%)를 사용

2) 아동수당은 75.55%, 부모급여는 68.34%를 적용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는 18세 미만 아동수에 1인당 월 지급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향후 5년간 총 38.2조원으로 추계됨

[표 2] (아동수당)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추가 지급대상자 수(A, 천명)	6,625	6,358	6,136	5,931	5,700	30,751	6,150
월 지급액(B, 만원)	10	10	11	11	11	53	11
지원개월 수(C, 개월)	12	12	12	12	12	-	12
평균 지급률(D, %)	97.2	97.2	97.2	97.2	97.2	-	97.2
합계(A×B×C×D, 조원)	7.9	7.7	7.6	7.5	7.4	38.2	7.6
- 국비	6.0	5.9	5.8	5.7	5.6	28.9	5.8
- 지방비	1.9	1.9	1.9	1.8	1.8	9.3	1.9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5.55%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현행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총재정소요는 5년간 총 11.6조원으로 추계됨

[표 3] (아동수당) 현행 지급 기준 유지시 총재정소요 :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급대상자 수(A, 천명)	2,177	2,046	1,953	1,898	1,872	9,946	1,989
월 지급액(B, 만원)	10	10	10	10	10	-	10
지원개월 수(C, 개월)	12	12	12	12	12	-	12
평균 지급률(D, %)	97.2	97.2	97.2	97.2	97.2	-	97.2
합계(A×B×C×D,조원)	2.5	2.4	2.3	2.2	2.2	11.6	2.3
- 국비	1.9	1.8	1.7	1.7	1.6	8.8	1.8
- 지방비	0.6	0.6	0.6	0.5	0.5	2.8	0.6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5.55%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가 바뀔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에서 “전년도 아동수당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6.6조원(연평균 5.3조원)으로 추계됨

[표 4] (아동수당)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A)	7.9	7.7	7.6	7.5	7.4	38.2	7.6
현행 지급 기준 유지시 총재정소요(B)	2.5	2.4	2.3	2.2	2.2	11.6	2.3
추가재정소요(C=A-B)	5.4	5.4	5.4	5.3	5.2	26.6	5.3
- 국비	4.0	4.0	4.0	4.0	3.9	20.1	4.0
- 지방비	1.3	1.3	1.3	1.3	1.3	6.5	1.3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5.55%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부모급여) 개정안에 따라 2세 미만 아동에게 “100만원(0세, 2024년 기준)과 50만원(1세, 2024년 기준)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인 수당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인 기존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과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
 - 0세 및 1세 아동수에 각각 월 100만원과 월 50만원('24년 기준)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과 월 100만원과 월 50만원의 차액을 곱하여 산출

[표 5] (부모급여: 0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추가 지급대상자 수 (A, 천명)	217	217	228	238	247	1,147	229
월 추가지급액(B, 만원)	2.2	4.4	6.6	8.9	11.2	33.3	6.7
지원개월 수(C, 개월)	12	12	12	12	12	—	12
합계(A×B×C×D, 억원)	573	1,159	1,816	2,536	3,314	9,398	1,880
— 국비	392	792	1,241	1,733	2,265	6,423	1,285
— 지방비	182	367	575	803	1,049	2,976	595

-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68.34%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월 추가지급액은 2024년 기준 월 1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에서 월 100만원을 차감한 연도별 금액임
 3)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4)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6] (부모급여: 1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추가 지급대상자 수 (A, 천명)	228	217	216	227	237	1,126	225
월 추가지급액(B, 만원)	1.1	2.2	3.3	4.4	5.6	16.7	3.3
지원개월 수(C, 개월)	12	12	12	12	12	—	12
합계(A×B×C×D, 억원)	301	578	862	1,210	1,590	4,542	908
— 국비	206	395	589	827	1,086	3,104	621
— 지방비	95	183	273	383	503	1,438	288

-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68.34%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월 추가지급액은 2024년 기준 월 5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에서 월 50만원을 차감한 연도별 금액임
 3)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4)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부모급여의 지급액을 현행 “100만원(0세)과 50만원(1세)”에서 “전년도 아동수당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조 3,940억원(연평균 2,788억원)으로 추계됨

[표 7] (부모급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0세 추가재정소요(A)	573	1,159	1,816	2,536	3,314	9,398	1,880
1세 추가재정소요(B)	301	578	862	1,210	1,590	4,542	908
추가재정소요(C=A+B)	875	1,737	2,678	3,747	4,903	13,940	2,788
- 국비	598	1,187	1,830	2,561	3,351	9,527	1,905
- 지방비	277	550	848	1,186	1,552	4,413	883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68.34%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가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의 지급액을 전년도 지급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8조원(연평균 5.6조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변경(A)	5.4	5.4	5.4	5.3	5.2	26.6	5.3
부모급여 지급액 변경(B)	0.1	0.2	0.3	0.4	0.5	1.4	0.3
추가재정소요(C=A+B)	5.5	5.6	5.7	5.7	5.7	28.0	5.6
- 국비	4.1	4.2	4.2	4.3	4.3	21.0	4.2
- 지방비	1.3	1.4	1.4	1.4	1.4	6.9	1.4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통계청 2023년 「장래인구추계」(중위시나리오)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